아래 사항은 보험업법 제111조(대주주와 거래제한 및 금지행위 등) 제3항, 보험업법시행령제57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-5조에 의한 공시사항입니다.

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

보험업법 제111조 제3항 관련 사항

대주주 성명		동부일렉트로닉스
신용공여 규모		65,000,000,000원
거래조건		- 종류 : Syndicated Loan - 기간 : 2004.06.10 ~ 2012.12.10 - 금리 : 무보증회사채A(3년) + 2.75%
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금액	채권	-
	주식	-
대주주의 의결권 행사		-
기 타		(1) 내용 - 본 사항은 2004년 4월 9일에 기 체결된 계약 건과 관련한 사항으로 - 동부한농화학과 차주인 동부일렉트로닉스의 합병 사항에 대해 대리은행(산업은행)이 채권단에 합병 동의를 요청해 옴에 따라 -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를 동의하는 것으로 승인 처리함 (2) 이사회 결의일 : 2007.3.16(금) (3) 기타 - 동부일렉트로닉스의 동부한농화학으로의 흡수합병으로 인해 본 신용공여의 채무자가 동부한농으로 변경될 예정임 - 합병일정 및 채무자 변경 약정체결일정은 미정